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200970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9.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8가합51317 판결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1. 25. 접수 제83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8. 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1. 25. 접수 제83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3행과 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⑤ C과 피고는,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2017가합572호 대여금 청구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일이 고지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점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별도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종, 판사 김종우, 판사 이영창

별지

#### 부동산 목록

1. 양주시 K 전 1989㎡
2. 양주시 L 전 760㎡
3. 양주시 M 임야 1317㎡. 끝 .

